

2004. 3. 13(토). 10:00
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심 사 보 고

총 무 위 원 회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 : 2004. 3. 2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4. 3. 4.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4 - 9호
- 라. 상정 및 심사일자 : 2004. 3. 12.(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)

2.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한 경남도의 인력 승인으로 군의 정원을 조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(안 제2조)
 - 총 계 : 607명 ⇒ 628명(증 21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593명 ⇒ 614명(증 21명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기구 및 인력증원 협의(군 ⇔ 경남도, 2004. 2. 20)
 - 3담당 신설, 21명 증원(6급 3, 7급 7, 8급 6, 9급 3, 기능 2)

○ 담당별 인력 및 주요업무

담당명	인원	주요업무
계	21명	
평생교육담당	4명	○ 평생학습도시의 교육특성화 여건조성(신규) ○ 대학 등 교육기관 지원육성(기획감사실+행정과) ○ 평생교육원 운영 및 교과목 개발(기존)
가축위생담당	4명	○ 우유공장 및 섬유질가공 사료공장 건립에 따른 수요증가 ○ 조류독감, 구제역 등 가축질병업무 증가 ○ 축산업등록제(2004시행)와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운영
방문보건담당	2명	○ 거동불편 독거노인의 증가로 의료취약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○ Call 의료서비스 확대 운영
신규행정수요	11명	○ 읍면 7명, 건축 1명, 상하수도 1명, 주차단속요원 2명

나. 보정정원 활용

- 보정정원(정원의 5%) 총 30명 : '04년도 21명, '05년도 9명
- 협의시 경남도의 당부사항

보정정원을 활용하는 자치단체는 인건비 보조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 증원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직무분석을 철저히 하여 인력 낭비요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
다.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

-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는 없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(생략)

5. 토론요지(생략)

6. 수정안 요지(해당없음)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-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거 총 정원의 5% 범위 내 증원이 가능한 보정정원에 대하여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임.
- 심사과정에서 평생교육담당은 기존 실과에 흡여져 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운용할 경우, 일부 인력은 기존 인원을 활용하는 문제와 가축위생담당은 현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축산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이 있으므로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문제 등이 지적된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고,
- 또,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고,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집행부에서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행정서비스의 질도 개선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(생략)

9. 기타 필요한 사항(생략)